

# **충남연구원-대한지리학회 학술·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서**

충남연구원과 대한지리학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연구 수행, 정보공유 등의 학술·연구교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술연구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원칙)**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**제3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본 협약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1.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
2. 학술자료, 출판물, 지식정보 공유
3. 연구자료 활용 및 인적 자원 등의 교류
4. 충남지역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정책연구
5. 지역 소멸 및 산업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연구
6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협력 활동

**제4조(협력창구)** ① 양 기관은 상대기관에 사업 및 기관 홍보를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양 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 기관을 업무추진 및 홍보활동을 위한 협력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쌍방은 동 역 할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**제6조(지적재산권)** 본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개별 연구협정 내용에 따른다.

**제7조(상호협의)**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8조(효력발생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,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신사협정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호혜를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6월 24일



**대한지리학회**  
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
1945

학  
황

회  
철

장  
수



**충남연구원**  
ChungNam Institute

원  
유

동

장  
훈